독재위해「유보」했던 인권

◇ 우리사회의 비합리적 구조를 척결하기 위한 시리즈 <8>

維新…이땅을 얼어붙힌 억압의 통치론

탄압 극치 이룬「겨울공화국」

억압자의 통치논리 정당화시킨 불법적 정변

反유신 민주화 연합전선으로 독재체제 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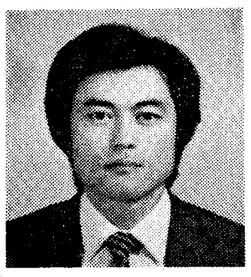

문 재 인

1952년 1월24일 生. 72년본교 법률학과에 입학, 도중에 제적, 구속을 겪으며 80년10월 졸업. 80년 6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있으며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 이사를 겸하고있다.

Ⅰ. 머리말

지금까지의 한국 민주주의사상 마지막 직선제를 통하여 3선의 길에 들어선 박정권은 곧이어 영구집권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른바 유신체제이다.

유신체제는 그 근본취지가 「한 사람」을 위하는데 있었던만큼 필연적으로 「그 사람」과 그의 추종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게 된다. 정권 스스로 이를 두고 「국가를 위해 인권을유보」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계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식어가 붙은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었으며, 그들이 즐겨 말하는 「국가」란 정권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신의 역사는 비민주세력과 민주세력간의 끊임없는 대립·항쟁의 역사일수밖에 없었고, 국민을 배반한 모든 독재체제의 운명이 그러하듯 비참한 종말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다.

Ⅱ. 유신의 기만성과 불법성

72년 7월 4일 발표된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은 오랫동안 분단의 질곡에 시달려온 국민들을 열광시키고 감격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자주통일, 평화통일,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단결등 쌍방이 합의한 통일 3원칙의 내용도 감격적이었고, 그해 5월부터 6월초에 걸쳐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비밀리에 개최되었다는 남북고위정치협상의 숨은 이야기도 감격적이었다. 국민은 정부의 통일노력에 감격하였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목숨을 건 무용담에도 감격하였다.

서울과 평양간의 상설직통전화의 개설, 남북적십자사 대표단의 평양및 서울 상호방문,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회의등 뒤따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는 금시라도 통일이 될것 같았다.

이렇게 전국민이 통일의 환상에 젖어있을때 유신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란 명분을 걸고 마치 예정된 각본처럼 선포되었다.

박대통령은 그해 2월17일 밤 발표된「특별선언」을 통해 유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는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영광스런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실로 우리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였으며, 이어 유신헌법안의 제안에 즈음한 담화에서는 『만일 여러분이 헌법개정을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남북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 들이고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그야말로국민의 간절한 통일염원에 빙자한 무서운 기만이며 협박이였다. 비상계엄을선포한 상황적요건은 국내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나라정세는 평온하기만 하였다. 71년 10월5일 발동된 위수령과 12월6일선포된 「국가비상사태선언」, 그리고 그달 27일 날치기로 통과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으로 대학은 모처럼 데모없는 1년을 보냈고 그밖에재야단체의 활동도 거의 휴면상태에 있었다.

국회해산은 더더구나 아예실정법상 근거조차 없는 것이었다.

정권은 「초헌법적 조치」라고 호도하였으나, 10월 유신은 한마디로 또 한번의 불법적인 정변이었다.

불법적인 정변이 평화통일과 국력배양에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 유신체제는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분열과 정권안보를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엄청난 국력의 소모를 가져왔을 뿐이다. 통일의 분위기 역시 「7·4 공동성명」이 뒷걸음질만 쳐왔음은 역사가 보여주는바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라는 통일주체국민회의도 4년에 한번씩 체육관에 모여 박대통령의 집권연장을 확인한 외에 통일에 기여한 바는 손톱만큼도 없었다.

Ⅲ. 유신 헌법의 인권조항

유신체제의 인권경시는 유신헌법의 기본권조항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물론 유신헌법의 기본권조항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아니하는 잠식적인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선언적의미는 있다고볼때 우리는 유신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종전헌법의 그것을 비교해봄으로써 유신정권의 인권의식을가늠하여 볼수 있다.

유신헌법은 종전의 헌법에규정되어 있던 기본권조항중 구의 긴급조치권, 군법회의에서일반국민의 재판을 관할하게 할수있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군인·군속·경찰공무원등의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한규정, 공무원 기타 일정한 사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규정의 삭제와 신설 모두가 민주국가에서의 본질적 인권인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유재산권, 그리고 노동권을 제약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유신체제가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민주세력의 끈질긴비판과 저항에 부딪친것은 지극히당연하였다. 그러나 유신체제의종식은 곧집권의 종식이란 등식을 세우고 있던 유신정권이 비판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리 없었다. 비판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가혹한 탄압이 내려졌다. 형법, 집시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있는 법만 가지고 안될 때는긴급조치를 선포하여 처벌의 근거로 삼았다.

◇…억압된 인권에 반대급부로 일어난 YH사건. 그누구도 이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헌법개정을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남북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이다』라며 국민의 간절한 통일염원에 빙자한 무서운 기만과 협박이….

유신헌법 자체에 헌법개정조항이 엄연히 규정되어있음에도 헌법을 비판하면 처벌되었다. 긴급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만 하여도 처벌되었다.

76년 2월 부산중부교회 대학생회에서 회지를 발간하였는데 인사말중 『한국적이거나 유신따위는 말고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계적이고 우주적인눈으로써 이땅위의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자』는 부분가운데 「한국적이거나 유신따위」라는 문구가 문제되어 회장등 관련자 수명이 구속처벌된 사례도 있다.

강신옥변호사는 긴급조치위반 피고인을 변론하다가 법정에서 구속되어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실로 유신체제는 말한마디, 문장 한구절로도 구속 투옥될 수 있고 변호인의 변호권마저 박탈하는 제도였다.

결핏하면 간첩단이며 내란을 모였고, 매카시즘이 극성을 부렸다.

수 많은 학생, 교수, 언론인, 근로자등이 구속·처벌되거나, 학교와 직장을 쫓겨났다.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사로 사형, 무기, 30년, 20년, 15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형량자체가 정찰제인양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재판도 요식행위에불과하였다.

인혁당 관련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자재심또는 감형청원의 기회도주지아니하고 그 다음날 전격 처형해버리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대학캠퍼스내에경찰·군인·기관원이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대학은 학생시위를 다스리지못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폐교